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8-3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18.1.17)을 실손의료보험 보험상품설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반영(안 제7-63조)

계약전 알릴사항이 축소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과 다르게 설계할 수 있도록 허용함

나. 기업성보험의 비통계요율 사용시 미경과보험료 추가적립 시행 시기 및 관련 재검토 시한 연장(안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15호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 제3조)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적용 준비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업성보험의 비통계요율 사용시 미경과보험료 추가적립 시행 시기 및 관련 재검토 시한을 2년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보험과, 전화 : 02-2100-2964, 팩스 : 02-2100-2947, 이메일: jieun8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